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총학생회 세칙 제1호] [제정 1988.3.20, 공포 1988.3.20]

제 정	1988. 3. 20 <제 정>	6차개정	2015. 11. 23 <일부개정>
1차개정	1996. 9. 18 <일부개정>	7차개정	2016. 2. 2 <일부개정>
2차개정	1997. 10. 15 <일부개정>	8차개정	2017. 1. 10 <일부개정>
3차개정	2000. 10. 30 <일부개정>	9차개정	2019. 9. 9 <일부개정>
4차개정	2003. 9. 29 <일부개정>	10차개정	2020. 11. 10 <일부개정>
5차개정	2014. 11. 24 <전부개정>	11차개정	2021. 03. 23 <일부개정>
		12차개정	2021. 08.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제2절 선거운동본부	7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및 선거 공고	9
제2절 후보자 추천 및 등록	10
제3절 선거운동	13
제4절 이의제기	20
제5절 징계	20
제6절 투표	23
제7절 투표 성립	28
제8절 개표	28
제9절 당선	30
제10절 재투표, 재선거 및 보궐선거	30
제5장 선거 기록물 관리	31
제6장 선거시행규칙	32
부 칙	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9장[선거]에 의하여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원칙)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전임 총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계승하여 본회 모든 회원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 ③ 본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본 세칙은 본회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의 단과대학·독립학부,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등의 선거는 해당 단위의 회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회칙이 없거나 불완전할 경우 해당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장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2조(규칙 확정 회의)에 의한 결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4조(대표자 및 기구의 책임)

-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독립기구 등은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은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본회 정회원 모두에게 있다.
- ② 제1항의 정회원 여부의 확인은 제74조(선거인명부의 작성)에 의하여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선거권)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위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정회원인 자

3. 본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여러 후보에 대한 복수추천 허용)

제3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조(목적 및 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대중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칙」 제9장[선거] 및 본 세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결정·조절·통제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기구이다.

제8조(업무 및 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공정성·민주성·대중성을 구현할 제반사업의 기획 및 집행
2.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 전개
3.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홍보
4.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취재·보도에 대한 학내·외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5.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선거시행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6.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7.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8. 공동선거자금의 편성·운영 및 결산 공개
9.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0. 그 밖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② 온라인 선거 진행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 회원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독려할 의무가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학우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투표 7일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대중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그 의의와 내용을 공개한 후 금 1,000,000원 한도의 공동선거자금을 편성할 수 있으며 공동선거자금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잉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일정한 선거자금의 한도를 제한 할 수 있다. 단, 선거자금은 금 6,000,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1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그 산하에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중앙선거관리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회원인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 정회원인 자로 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최소 5인 이상은 중앙운영위원으로 정회원인 자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현직에 있는 중앙운영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해당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의결기구에서 해당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 파견에 관련된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당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현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단은 제10조(중앙선거관리위원)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중앙운영위원 중 2인으로 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회와 본회 특별기구, 독립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학생회 등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3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해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3. 특정 사안에 의하여 중앙운영위원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본회의 정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경우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요구서에 해임 요구와 관련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임 요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해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임 이후에도 본회 및 본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학생회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제14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요구서에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을 요구할 경우 직접 회의를 소집하여 사임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임요구서가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사임을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사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사임 이후에도 본회 및 본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학생회 선거의 후보 등록, 선거운동본부 가입을 할 수 없다.

제15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추가임명)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중 1인 혹은 모두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제10조(중앙선거관리위원)와 제11조(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을 재선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경우 또는 해임된 경우 제10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집)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의한 소집요구
- ②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하며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의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된다.

제17조(개의 및 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세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8조(표결방법)

-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중요 사안을 다루는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4.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제20조(지역선거관리위원회)

- 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부·과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를 기준으로 설치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부·과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또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선출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2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해당 결정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4시간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 지역선거운동본부장
 3. 해당 단위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 ④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집요구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 소집요구인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대표 소집요구인

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이의제기는 「사무처리세칙」에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하며, 이의제기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집행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의 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의무)를 준용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관리·감독하며 총학생회칙·세칙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결정·집행사항이 있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부·과 학생회에 집행위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위는 해당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

2. 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 안내 및 홍보

3. 부정선거행위와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규칙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 자료수집 및 적발

4. 기타 공정선거진행을 위한 제반 업무

제23조(선거협의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의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모든 단위의 선거가 진행되기 이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선거협의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전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협의회 개최 7일전에 소집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④ 당해 선거협의회의 주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⑤ 선거협의회에 불참하여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각 단위가 부담한다.

⑥ 선거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단위 선거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준수의 의무

2. 단위 별 공통적인 투표 진행방식에 대한 점검

3. 기타 선거 및 투표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4조(목적)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의 운동을 통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5조(구성)

- ①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2. 선거운동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원
-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최종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시점부터 구성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26조(예비선거운동본부)

- ① 예비선거운동본부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최종등록 이전까지 제27조(모집공고)의 모집공고를 통하여 구성된다.
- ② 예비선거운동본부장 및 예비선거운동본부원은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임명한다.

제27조(모집공고)

- ① 예비선거운동본부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운동본부는 최종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예비선거운동본부명 또는 선거운동본부명
 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예비선거운동본부장 또는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4. 모집 담당자 1인의 연락처
 5. 500자 이내의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 소개(해당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의 선거공약은 포함될 수 없다)
- ② 예비선거운동본부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의 공고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원 모집 공고문이 접수되면 12시간 이내에 회의를 개회하여 공고문을 심의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고문의 게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이때 해당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공고문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 ④ 특정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집공고를 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에 주

의 1회를 준다.

제28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제39조(후보자 등록)에 의하여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본부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본부원의 변동 사항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일 20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⑤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임명한다.
- ③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9조(후보자 등록) 제1항 제3호(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단,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⑥ 제5항에 의하여 승인된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는 익일부터 유효하다.

제30조(업무)

-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1조(의무)

- ①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본 세칙 및 본 세칙에 부수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발전적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본부실)

- ① 예비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 선거운동본부실을 둘 수 있다. 단, 예비후보자가 입후보자 최종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가 속한 예비선거운동본부는 즉시 선거운동본부실에서 퇴실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5조(예비후보자)에 따라 등록된 예비선거운동본부의 수가 많아 학내 공간 질서의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2.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③ 각 예비선거운동본부·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독립기구의 사무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무실
 3. 총학생회 자치공간 등 총학생회실로 간주할 수 있는 공간
 4. 기타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
- ④ 본회의 집행기구, 특별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는 예비선거운동본부 혹은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는 예비선거운동본부 혹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및 선거 공고

제33조(선거 일정)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2일 이상 3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10일 이상 12일 이내, 투표일을 2일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단, 추천 및 등록 기간과 투표일의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4조(선거 공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후보 등록 마감 시간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2절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제35조(예비후보자)

① 후보자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선거 공고 이후 후보자 추천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각 1부

2. 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이력서 각 1부

3. 예비후보자 등록예치금 금 100,000원

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제3호의 등록예치금은 무분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후보자 최종등록 이후 해당 후보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단, 해당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최종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해당 등록예치금은 공동선거자금에 귀속된다.

제36조(후보자 추천)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예비후보자 및 해당 예비후보자가 속한 예비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추천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③ 추천 서식에는 예비후보자 및 예비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④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는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비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37조(온라인 공간에서의 후보자 추천)

① 온라인 공간에서 추천을 할 경우, 추천 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1. 예비선거운동본부명

2. 예비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3. 추천인의 이름

4. 추천인의 소속 학부·과

5. 추천인의 학번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3일 전에 제1항의 추천 연서 양식을 배포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게시판에 예비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후보자의 약력

2. 선거운동본부장 및 선거운동본부 정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게시판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 연서를 게시할 수 없다.

⑤ 예비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가 관리하는 단체 채팅방에 후보자 추천 연서를 게시할 수 있다.

제38조(후보자 추천 기간)

- ① 후보자 추천 기간은 2일 이상 3일 이내로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추천 기간 시작일 6시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전날 20시까지로 한다.

제39조(후보자 등록)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파일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원서(「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서(「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
 3.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4.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사진 2매(파일로 제출)
 5. 출마소견문(A4 2매 이내, 파일로 제출)
 6. 핵심 선거 공약·으뜸구호·선거운동본부명(파일로 제출)
-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후보자 등록 기간 마지막 날 20시로 하며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40조(입후보 심사)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39조(후보자 등록)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6조(피선거권)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 모두 참석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예비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6조(피선거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9조(후보자 등록) 제1항에 의한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1조(입후보자 최종등록)

- ① 제40조(입후보 심사)의 입후보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을 허가한다.
- ② 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최종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5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에 의하여 그 즉시 이를 공고한다.

제42조(규칙 확정 회의)

- ① 제40조(입후보 심사) 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참가하는 규칙 확정 회의를 개최한다.
- ② 규칙 확정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합의하여 규칙에 규정할 사항을 정한다.
 1. 총학생회칙, 본 세칙 및 본 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2. 제32조(선거운동본부실)의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실 위치
 3. 제8조 제4항에 따른 공동선거자금의 책정 및 사용방안에 대한 합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할 온/오프라인 공간
 5.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온/오프라인 공간
 6. 기타 선거 제반 사항
- ③ 규칙 확정 회의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제42조(규칙 확정 회의) 제1항에 의한 소집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소집
 3.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소집 요구
- ④ 규칙 확정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 ⑤ 규칙 확정 회의의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제111조(선거시행규칙)에 의하여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제정한다. 단, 이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43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3.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
 4.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운영위원, 대표자회의 대의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5. 각 학부·과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운영위원, 대표자회의 대의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6.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분과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대표자회의 대의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7. 각 독립기구 및 특별기구 및 특별위원회의 기구장 및 회원
 8. 학내 자치 언론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속 기구에 사직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직하였음을 공고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사직서는 사직 직후 소속 단위의 게시판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후보자 사퇴)

-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개시 후 3일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 ② 사퇴한 후보자는 타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 ③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2인이 제3항의 사퇴 신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후보자 사퇴 신고서는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⑤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도중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운동기간의 2분의 1 이상 궐위될 경우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후보자 등록 등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최종등록 마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2. 추천인수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등록 학기
4. 선거운동본부명과 선거운동본부장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5. 출마소견문, 핵심 선거 공약, 으뜸구호
6.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사진

② 핵심 선거 공약 항목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협의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균등한 분량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46조(공동선거자금)

① 공동선거자금은 과잉 선거를 예방하고, 대중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② 공동선거자금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1. 제60조(공동 선거 벽보)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포스터
2. 제61조(공동정책자료집)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공동정책자료집
3. 각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공평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플랜카드 등 게시물

③ 공동선거자금의 편성과 구체적 금액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제42조(규칙 확정 회의)에서 정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47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행위이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 등 민주적인 선거풍토를 해치는 경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다.

1. 선거에 관련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본회 집행기구, 특별기구, 독립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본회 회원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 또는 주의 1회를 준다.

④ 선거운동기간 중 각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 ⑤ 선거운동은 반드시 학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⑥ 선거운동본부원은 학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부착하고 다닐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8조(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 ①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제47조(선거운동) 제2항 제3호에서 명시하는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유권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단, 제5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단,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제52조(선거운동 방법) 제3호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9조(선거운동 기간)

- ① 선거운동 기간은 10일 이상 12일 이내로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 6시부터 투표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 ③ 제2항의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50조(사전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간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그 외에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6조(후보자 추천)의 후보자 추천행위
 3. 설문조사(조사 당시에 출마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단순 설문조사만 가능)
 4. 후보자 지지 및 추대모임
 5. 제27조(모집공고)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행위

제5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 지역선거관리위원장 및 지역선거관리위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4.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5.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6. 학부·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7.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
 8.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9. 독립기구의 기구장 및 회원
 10. 특별기구의 기구장
 11.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집행위원, 운영위원, 대표자회의 대의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12. 각 학부·과 학생회의 집행위원, 운영위원, 대표자회의 대의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13.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대표자회의 대의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
 14.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자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지역선거관리위원장 및 지역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은 사임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4호에 제외한 호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 7일 전에 사임하고 이를 공고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속 기구에 사임의 의사를 통지하고 사임하였음을 제43조(후보자의 겸직 금지)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제52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정·후문유세·합동유세
2. 합동공청회 참가
3. 선전물(현수막·조형물·유인물 등)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서의 적극적 유세

제53조(개인유세)

- ①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의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강의 시작시간, 점심시간, 강의실 이동시간의 강의실, 강의동, 정문 주변 등 이동인구가 많은 시간·장소를 한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통하여 독점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개인유세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제3항 및 제4항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준다.

⑦ 개인유세에서 TV, 빔 프로젝터, PC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4조(정·후문유세)

- ① 정·후문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선거운동 기간 중 매일 2회 정문 혹은 후문에서 시행한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후문유세에서의 유세 순서 및 시간과 장소는 제42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후보자는 정·후문유세장에 유세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정·후문유세에서의 유세자격을 박탈한다.
- ④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후보자는 정·후문유세가 끝날 때까지 정·후문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 ⑦ 선거운동본부는 정·후문유세 시간 동안 유인물 및 정책자료집을 배포할 수 있다.
- ⑧ 정·후문유세 중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전 유인물 및 정책자료집을 배포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질서를 갖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 ⑨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⑩ 정·후문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55조(합동유세)

- ① 합동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2회 이하로 시행한다.
- ② 합동유세 시간은 제42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2시간 이내로 정하며 선거운동본부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다.
- ③ 합동 유세 순서는 제42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추천하여 정한다.
- ④ 합동유세의 유세장소는 제42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정하며 지나친 소음, 통행 방해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다.
- ⑤ 후보자는 합동유세장에 유세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가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합동유세에서의 유세자격을 박탈한다.
- ⑥ 후보자는 유세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엠프 등 유세시설을 철거하여 유세를 중단시킨다. 단, 유세자를 교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유세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⑦ 후보자는 합동유세가 끝날 때까지 합동유세장에서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 ⑧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거운동본부의 선거홍보물을 게시·배포·방송·연출할 수 없다.
- ⑨ 각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유세시간에 한하여 선거홍보물을 게시·배포·방송·연출할 수 있다.
- ⑩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

회를 준다.

⑪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56조(합동공청회)

① 합동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② 합동공청회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공청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합동공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자치 언론과 협의하여 개최하며 이때 학생자치 언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외대」, 외대교육방송국 서울 FBS, 외대학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Argus로 한정한다.

④ 후보자는 합동공청회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합동공청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합동공청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가 합동공청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공청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합동공청회 참석 자격을 박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생자치언론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참석자의 서면 질의, 자유질의로 구성되며 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 질의 및 응답시간은 제42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공청회의 구성에서 학내 자치단체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학내 자치단체의 질의 및 후보자의 응답시간은 제42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⑧ 합동공청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⑨ 합동공청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사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①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수 및 내용의 사전허가를 거친 후 게시·배포 한다.

②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은 본 세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선거 운동기간 중 수시로 제작·제출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에 대한 사전 허가 요청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시각을 미리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개최된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회의 결과 해당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이 제58조(게시물), 제59조(유인물), 제60조(공동 선거 벽보), 제61조(공동정책자료집)의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이 허가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다시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을 게시·

배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⑦ 모든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게시 및 배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⑧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으로 한다.

제58조(게시물)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으며 모든 포스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감독 하에 부착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포스터는 A2 이하, 1면 이하, 2종 이하로 한정하며 각 선거운동본부 당 300부를 초과하여 부착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모든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독 하에 게시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수막은 가로 7m 이하, 세로 1m 이하, 3도 이하, 1면 이하, 2종 이하로 한정하며 2종 도합 6개를 초과하여 게시할 수 없다.

⑤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조형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독 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⑥ 제5항의 조형물은 가로 1m 이하, 세로 1m 이하, 높이 2m 이하, 1종 이하로 한정하며 도합 2개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 게시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59조(유인물)

① 선거운동본부는 4회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인물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인물은 회당 2,000부 이내로 한다.

③ 유인물의 구성은 신문과 리플렛으로 하며 도합 3종 이하로 한정하고 3종 도합 5,000부 이하로 한정한다.

④ 제3항의 신문은 A4 이하, 4면 이하, 1도 이하, 대판 이하, 1종 이하로 한정한다.

⑤ 제3항의 리플렛은 A5 이하, 1장 이하, 3도 이하, 2종 이하로 한정한다. 단, 리플렛을 접지하면 펼쳤을 때 A4 크기 이하로 한다.

⑥ 모든 유인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60조(공동 선거 벽보)

① 공동 선거 벽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으로 발행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가 제출하는 공동 선거 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명시할 수 없다.

1. 선거운동본부명, 으뜸 구호 및 기호
2. 후보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 학번, 약력
3. 후보자 사진

4. 투표일

- ③ 공동 선거 벽보는 A2 이하, 1면 이하, 1종 이하로 한정하며, 파일 제출 마감 시각은 제 42조(규칙 확정 회의)를 통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공동 선거 벽보와 함께 제8조(업무 및 권한) 제2항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⑤ 각 선거운동본부는 제3항에 의해 정해진 시각까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61조(공동정책자료집)

- ① 공동정책자료집은 2회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발행한다.
- ② 제1항의 공동정책자료집은 회당 3,000부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의 공동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B5 이하, 40쪽 이하로 한정한다. 단, 단독 선거의 경우 B5 이하, 80쪽 이하로 한다.
- ④ 제1항의 공동정책자료집의 표지는 도수 제한이 없으며 내지는 1도 이하로 한정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며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해진 시각까지 파일 및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62조(온라인 선거운동)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SNS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개통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온라인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온라인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계정의 수를 제한하고 해당 계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계정을 보고 받으면 각 선거운동본부별 계정을 공고한다.
-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이 제4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계정 이외의 다른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 선거 유세를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⑦ 그 밖에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선거운동본부복)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상징물·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⑤ 선거운동본부복을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착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⑥ 선거운동본부복은 반드시 학내에서만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절 이의제기

제64조(이의제기 방식)

- ① 선거에 관련된 이의제기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만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③ 투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이 선거운동본부장을 대신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개표와 관련하여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이의제기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⑥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65조(이의제기 처리)

- 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 ② 이의제기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의제기 처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 미숙지·위반 등으로 인해 선거에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절 징계

제66조(징계)

징계라 함은 본 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시정명령·주의·경고로 나뉜다.
- ② 시정명령이 5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시정명령 5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5회는 소멸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시정명령 2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된다.
-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하며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

당 주의 2회는 소멸된다.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68조(시정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며 해당 징계결정문과 공고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7조(모집공고) 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에 결함이 있을 경우
2. 제28조(선거운동본부원) 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경우
3. 제29조(선거운동본부장) 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장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경우
4. 제47조(선거운동) 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5. 제47조(선거운동) 제4항의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제57조(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4항의 게시물·유인물·공동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아니할 경우
7. 그 밖에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② 시정명령을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공간, 해당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선거운동공간에 게시한다.

제69조(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며 해당 징계결정문과 공고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시정명령을 5회 받았을 경우(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5회는 소멸한다)
3.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 2회를 받았을 경우(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2회는 소멸한다)
4. 제27조(모집공고) 제4항의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모집공고를 하였을 경우
5. 제28조(선거운동본부원) 제4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본부원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6. 제32조(선거운동본부실)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실로 결정된 공간 이외의 학내 공간을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하였을 경우
7. 제40조(입후보 심사) 제4항의 입후보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경우
8. 제47조(선거운동) 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9. 제47조(선거운동) 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학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비표 등 지정물을 부착하고 다녔을 경우

10. 제50조(사전선거운동) 제3항의 후보자 지지 및 추대모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1. 제53조(개인유세) 제6항의 개인유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2. 제53조(개인유세) 제7항의 개인유세에서 TV, 빔 프로젝터, PC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13. 제54조(정·후문유세) 제10항의 정·후문유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4. 제55조(합동유세) 제10항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5. 제56조(합동공청회) 제5항의 후보자가 합동공청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6. 제57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5항의 선거관련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에 타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17. 제57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7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 외에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을 게시 또는 배포하였을 경우
 18. 제58조(게시물) 제8항의 게시물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9. 제59조(유인물) 제6항의 유인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허가한 장소 외의 장소에 배포하였을 경우
 20. 제61조(공동정책자료집) 제5항의 정책자료집 원고마감시각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21. 제62조(온라인 선거운동) 제6항의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2. 제63조(선거운동본부복) 제4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였을 경우
 23. 제63조(선거운동본부복) 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본부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24. 제63조(선거운동본부복) 제6항의 선거운동본부복을 학외에서 착용하였을 경우
 25. 제64조(이의제기 방식) 제6항의 이의제기 방식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6. 제75조(투표일 및 투표시간) 제3항의 투표시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7. 제102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제2항의 개표장 출석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8.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경우
- ② 주의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공간, 해당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선거운동공간에 게시한다.

제70조(경고)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며 해당 징계결정문과 공고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되었을 경우(이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36조(후보자 추천) 제4항의 강의실에서의 유세를 통한 추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47조(선거운동) 제5항의 학외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을 경우
 5. 제50조(사전선거운동) 제4항의 후보자 추대모임을 알리기 위하여 규정 규격 외의 선전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6. 제50조(사전선거운동) 제5항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제5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5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8. 제57조(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의 사전 허가) 제6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정책자료집을 게시·배포하였을 경우
 9.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을 경우
 10. 선거에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을 협박하거나 선거진행 또는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였을 경우
 11. 선거에 관련된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을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에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였을 경우
 13.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경우
 14.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 경우
 15.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에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 후보자, 타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6.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경우
-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공간, 해당 선거운동본부 온라인 선거운동공간에 게시한다.

제71조(징계의 의결 및 취소)

- ① 징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을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③ 제2항의 재심의 요구는 동일한 징계에 관하여 3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주의 또는 경고의 취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표

제72조(투표방법)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

거시행 여부를 결정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제73조(투표관리)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교내에 설치되는 모든 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투표관리요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1인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74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학기의 4분의 1 선 이후 투표 개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 해당 학기 정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75조(투표일 및 투표시간)

- ①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표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온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시작일 8시 30분부터 투표종료일 오후 6시 30분까지로 한다.
- ③ 투표시간 및 투표일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종료 전 1시간 이내에 그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투표시간 및 투표일 연장을 의결하고 공고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원 확인 지연 등의 사유로 투표가 지연되었을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이를 위한 투표 연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량 하에 투표 마감 후 30분 이내로 한다.
- ⑤ 투표시작과 마감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76조(투표소)

- ①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하여 3개 이상 설치한다.
-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標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투표소 1개 당 투표함 2개 이상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
- ⑥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 30분 전에 투표소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모든 투표소에는 매 시간별 단과대학·독립학부별 투표율 현황이 부착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선거의 경우 투표율 현황 집계 시간대를 12시, 15시, 18시, 21시, 24시로 설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⑨ 모든 투표소에는 투표방법, 투표용지의 원본 및 확대 모형도, 무효표에 대한 범례가 부착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모든 투표소에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번,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39조(후보자 등록)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출한 추천서의 추천인 수가 많은 순서로 후보자의 게재 순서를 정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④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에 제작된 투표용지의 원본 및 확대 모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신분 확인
2. 선거인의 날인 또는 서명
3. 투표관리인의 날인 및 서명
4.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79조(신분 확인)

①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전자선거인명부제를 운영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번의 입력 등 그 밖에 서명을 대신할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학증명서 혹은 정회원 등록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0조(투표용지 교부)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경우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기표 및 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개의 선거운동부부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

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82조(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각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치한 투표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본부원 명부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에 비치된 참관시간기록표의 소속 선거운동본부 항목에 이름, 참관을 시작한 시각, 참관을 종료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참관시간기록표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찰을 각 선거운동본부에 발부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 명찰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⑥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에 대하여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의 판단 하에 이를 처리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단, 투표관리요원은 무분별한 촬영을 제재할 수 있으나 징계를 줄 수는 없다.

④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투표참관인이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을 해당 투표소에 입회시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84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 제63조(선거운동본부복) 제2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은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선거인명부 열람 행위

5.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총학생회칙 및 본 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부여한다. 이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당일 투표 종료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85조(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 ①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임을 증명하는 비표 또는 완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86조(선거운동본부의 투표 권유 행위)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7조(투표의 비밀보장)

-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허용한다.
-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88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 ① 투표 시작일에는 투표 개시 30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각 투표소로 이송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입회하여 투표함의 결함 유무를 확인 및 봉쇄한다.
- ② 투표 2일차부터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해진 투표함은 투표 개시 30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과 선거운동본부원이 함께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투표용지·선거인명부·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89조(투표 종료 시 투표함 이송)

- ①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각 선거운동본부장은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② 투표관리요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 ③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해진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과 선거운동본부원이 함께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남은 투표용지·선거인명부·참관시간기록표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관리요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90조(투표함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남은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91조(투표함 보관)

- ①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 이상과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한 1인 이상이 함께 해당 장소에 상주하도록 한다.

제7절 투표 성립

제92조(투표 성립 요건)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50% 이상의 투표율로 성립한다. 단, 단독 선거일 경우 30% 이상의 투표율로 성립한다.

② 투표 성립 여부는 선거인명부에 서명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투표 성립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선포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성립 선포 이후 개표과정에서 총 투표율이 제1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2항의 투표 성립 선포 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여도 해당 투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8절 개표

제93조(개표관리)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제94조(개표 시작 시각)

개표 시작은 투표 마감 후 1시간 이후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95조(개표장)

개표장은 학내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96조(개표소)

① 개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하는 장소를 말하며 개표장 내에서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파견한 개표참관인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97조(개표 시작 시 투표함 이송)

모든 투표함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된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가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8조(개표절차)

① 개표는 투표소 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총 투표인 수의 공고
2.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하여 보관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 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 별로 반복
7. 최종 결과 발표

제99조(투표용지의 유·무효처리)

- ① 후보자 1인에게만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을 유효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는 것
 2.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4.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5. 경계선에 기표한 것
 6. 표기란 밖에 기표한 것
 7. 투표용지에 정해진 기표용구 표식 이외의 문자 또는 이름을 기입한 것
 8. 투표 당시 공개된 것
 9. 하나의 기표란에 3회를 초과하여 기표된 것
 10. 그 외의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3.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표로도 보지 아니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의 범례 등에 관하여 제77조(투표용지) 제5항의 공고와 동시에 한다.

제100조(투표함의 무효처리)

- 투표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투표함을 무효처리 하고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산입한다.
1. 투표 도중 투표함이 개봉될 경우
 2. 투표 개시 또는 개표시 자물쇠를 이용하여 봉하여진 투표함의 자물쇠·서명 등의 훼손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101조(오차)

- ① 모든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 총합과 모든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 총합의 차이(이하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이상 5%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② 총오차가 5%를 초과할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되며 제108조(재선거)에 의하여 재선거를 시행한다.

제102조(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

- 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를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 ②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이 개표장에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103조(개표참관인)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104조(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 ①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절 당선

제105조(당선의 기준)

- ① 개표 결과 유효표의 최다 득표선거운동본부를 당선인단으로 한다. 단, 단독선거일 경우 전체 정회원의 30% 이상의 투표와 전체 투표수 중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한 선거운동본부를 당선인단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선인단을 확정할 수 없으며, 제107조(재투표·결선투표)와 제108조(재선거)에 의하여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1.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이상일 경우(재투표)
 2. 최다 득표 선거운동본부가 두 개 이상일 경우(결선투표)
 3. 1위 득표 선거운동본부와의 득표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은 선거운동본부가 있을 경우(결선투표)
 4. 단독선거에서 총 찬성표와 총 반대표의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재투표)

제106조(당선공고)

-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이의신청의 인용·기각에 관하여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개표 결과의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최종 당선확정을 공고하며 해당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번
 2.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 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총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다)

제10절 재투표,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107조(재투표·결선투표)

- ① 개표 결과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이 있는 모든 선거운동본부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② 최다 득표 선거운동본부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최다 득표를 기록한 모든 선거운동본부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③ 1위 득표 선거운동본부와의 득표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은 선거운동본부가 있을 경우 1위 득표 선거운동본부와 해당 선거운동본부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④ 단독선거에서 총 찬성표와 총 반대표의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적을 경우 재투표를 시행한다.
- ⑤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재투표·결선투표가 결정되면 그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 및 무효표에 관계없이 득표수가 많은 선거운동본부를 당선인단으로 한다.
- ⑥ 재투표·결선투표에서도 최다 득표선거운동본부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24시간 이내에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의 다수표를 얻은 선거운동본부를 당선인단으로한다.

제108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결정하며 이때 해당 후보는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1. 단독선거에서 총 찬성표와 총 반대표의 차이가 총 무효표보다 많고 총 반대표가 총 찬성표보다 높을 경우
 2. 재투표·결선투표에서도 총오차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을 경우
 3. 제101조(오차) 제2항의 개표 결과 총오차가 5% 이상으로 선거가 무효 되었을 경우
 4. 입후보자·당선인의 부존재 또는 징계·괘위 등의 사유로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더 이상 선거를 진행할 후보자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재선거가 결정될 경우 그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재선거의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재량 하에 시기를 정하되 익년 4월 둘째 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재선거 시행 일정에 관하여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9조(보궐선거)

- ① 보궐선거는 「총학생회칙」 제203조(보궐선거)에 의하여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사고 사퇴 등의 사유로 괘위된 때 잔여임기가 230일이 넘을 경우에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가 결정될 경우 그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공고한다.
- ③ 보궐선거 시행 일정은 괘위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 기록물 관리

제110조(선거 기록물 관리)

- ① 선거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 ② 그 밖에 선거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선거시행규칙

제111조(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2조(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발의한다.
 -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의
 - 3. 제42조(규칙 확정 회의)의 규칙 확정 회의에 따른 합의
-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의결한다.
 - 1.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찬성

부 칙

본 세칙은 공포 후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 11. 10> 본 세칙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1. 03. 23> 본 세칙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1. 09. 06> 본 세칙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한다.